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1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1년 11월 25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7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1년 12월 16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 가. 제안이유

2021년도 기준인건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정원 반영을 위한 조정과 현장 중심의 인력 배치를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기구 조정 현황

현 행	개 편	비 고
본청 2국 1실 15과(87담당)	본청 2국 1실 15과(89담당)	+2담당
직속기관 5과(29담당)	직속기관 5과(29담당)	-
1사업소(4담당)	2사업소(4담당)	+1사업소
의회(1담당)	의회(1담당)	-
8읍면 1출장소(38담당)	8읍면 1출장소(38담당)	-

- 사업소·담당 신설, 폐지 및 분장사무 대강 조정(안 제12조, 14조, 16조)

구 분	부 서	비 고
사업소 신설	농기계임대사업소	+1
담당 신설	건설과(건설기술관리담당) 올림픽유산과(청소년올림픽담당) 유통산업과(농촌협약담당)	+3
담당 폐지	기술지원과(농업기계담당)	△1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현진)

- 본 조례안은 '21년도 기준인건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정원 반영을 위한 조정과 현장 중심의 인력 배치를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구조정에 있어 본청 2국 1실 15과 87담당을  
본청 2국 1실 15과 89담당으로 2개 담당이 신설되고,  
1사업소에서 2사업소로 1개 사업소가 신설되고  
건설기술관리담당(건설과), 청소년올림픽담당(올림픽유산과),  
농촌협약담당(유통산업과)이 신설되며  
농업기계담당(기술지원과)이 폐지되고  
사업소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농촌협약에 관한 업무

제12조제3호 중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 1.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하수도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시행

나. 상·하수도시설,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공기업 운영

라.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마.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원지 관리

바. 상·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사. 지하수에 관한 업무

아. 그 밖에 상·하수도, 분뇨처리와 관련된 사항

## 2. 농기계임대사업소

- 가. 농기계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 나.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유지관리
- 다. 임대농기계 사용 부과·징수
- 라. 영농기계화 기술보급 및 교육
- 마. 신기술 농기계 보급
- 바. 그 밖에 농기계와 관련된 사항

제20조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